제 142호

행 정 명 령

주지사가 교통을 규제하는 것을 승인하는 법규를 임시 수정하고 조치에 대한 시간 제한과 이의를 받는 시간을 설정하는 법률을 일시 정지

2015년 1월 26일에 본인은 Bronx, Dutchess, Kings, Nassau, New York, Orange, Putnam, Queens, Richmond, Rockland, Suffolk, Ulster, Westchester 카운티 및 인접 카운티에 재해 비상을 선언하는 행정명령 제141호를 발령하였습니다;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 지사는 주 재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어느 기관의 법규,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의 특정 조항,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재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행정법 2-B조의 29-a항에 의해 그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할 수 있는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 법규들을 2015년 2월 2일까지 임시로 수정합니다:

행정법 제24조; 하이웨이법 제104 및 346조; 차량교통법 제1602, 1630, 1640, 1650, 1660조; 교통법 제14(16)조; 빌리지법 제6-602 및 17-1706조; 일반시법 제20(32)조; 제2급시법 제91조; 뉴욕시 행정법전 제19-107(ii)조; 뉴욕주 법전 타이틀 21의 제107.1조, 주지사에게 교통 및 차량 운행을 규제할 권한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인은 이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15년 1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람 또는 사람의 대리인이 재난 비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범위 내에서 다음 법률을 임시로 정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0.80조, 행정명령 제141호에 따라 재난 비상사태가 선포된 날로부터 그러한 제한 기간 동안 이러한 시간 제한 기간이 끝날 때 지방 형사 법원에 중범죄 소장이 제출된 피의자를 해당 중범죄 소장의 결정을 앞두고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민사법 제201조, 행정명령 제141호에 의거 재난 비상이 선포된 일자로부터 시작되는 기간 동안 제한 기간이 종결되는 조치를 금지하는 한,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연장하는 법원 권한을 제한하는 한, 단 그러한 조치를 시작하는 시간이 민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상관 없음;

민사법 제5513조, 행정명령 제141호에 의거 재난 비상이 선포된 일자로부터 개시된 기간 동안에 종결되는 제한 기간에 관련되는 한;

청구법원법 제25조, 행정명령 제141호에 의거 재난 비상이 선포된 일자로부터 개시된 기간 동안에 제한 기간이 종결되는 이의 제기 시간 제한에 관련되는 한;

형사소송법 제30.10 및 30.30조, 이 조항들이 행정명령 제141호에 의거 재난 비상이 선포된 일자로부터 개시된 기간 동안에 그 제한 기간이 종결되는 경우에 형사 소추를 금지할 수 있는 한;

형사소송법 제460.10, 460.30, 460.50조 및 제460조, 이 조항들이 이의 제기 시간 제한에 관련되고 그러한 제한 기간이 행정명령 제141호에 의거 재난 비상이 선포된 일자로부터 개시된 기간 동안에 종결되는 한;

가정법원법 제1113조, 본조가 이의 제기 시간 제한에 관련되고 그러한 제한 기간이 행정명령 제141호에 의거 재난 비상이 선포된 일자로부터 개시된 기간 동안에 종결되는 한.

또한, 본인은 이 행정 명령일로부터 추가 고지까지의 기간 동안 법원이 재량권 행사를 통해 연장할 권한이 없는 법적 조치, 고지 또는 기타 절차 또는 소송의 제기 또는 송달을 위한 시간의 제한을 설정하는 기타 조례, 지방법, 규정, 명령, 규칙 또는 규제 또는 그 부분을 임시로 정지하고 수정합니다. 단, 그러한 시간 제한이 행정명령 제141호에 의거 재난 비상이 선포된 일자로부터 개시된 기간 동안에 종결되는 경우입니다.

Albany 시에서 본인의 자필과 뉴욕주의 옥새로

2015년 1월 26일 상기와 같이

발령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

Korean